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ERICA LINC+□□□□ □□□□□□ □□□□(□□□□□□□□□□)□ □□□□.

### 제3조(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내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ERICA 소속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한하여 적용된다.

- 1. □□□□□□ □□ □□□ □□□ □ □□□□□
- 2. □□□□□ □□□ □□ □□ □□□□□□□□□□ □ □□□□□□□□□□ □□ □□
- 3. □□□□ □□□ □□ □□ □□ □□

② 이 내규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

### 제4조(현장실습 운영)

- ① 현장실습은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설 및 수업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실습기관을 모집하는 방법은 공적 문서를 기반으로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에 필요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공적 문서를 기반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협약 및 서신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현장실습 학기)

- ① 현장실습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1□□ : 3□ 1□□□□ 1□□ □□□□□□□□□□, □□ 6□ □□□□□□ □□.
  - 2. □□ □□□□(□□ ‘□□□□’□ □□) : 1□□ □□□ □ □□□□□□□□ 8□ □□□□□□ □□.
  - 3. 2□□ : 9□ 1□□□□ 1□□ □□□□□□□□□□, □□ 12□ □□□□□□ □□.
  - 4. □□ □□□□(□□ ‘□□□□’□ □□) : 2□□ □□□ □ □□□□□□□ □□ □□ 2□ □□□□□□ □□.
- ② 현장실습 학기는 실습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주의 범위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실습의 구분)

① 현장실습은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1학기, 2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과 계절학기(하계 동계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② 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학기제 현장실습과 선택형 4+1학년제로 구분하며, 계절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③ 현장실습은 수행 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 제7조(운영기준)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은 제2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으로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
2. 법인·단체의 명칭, 목적, 업무, 자본, 자산, 신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이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되는 자
3. 법인·단체의 명칭, 목적, 업무, 자본, 자산, 신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이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되는 자
4. 법인·단체의 명칭, 목적, 업무, 자본, 자산, 신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이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되는 자
5. 법인·단체의 명칭, 목적, 업무, 자본, 자산, 신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이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되는 자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습명
2. 실습 목적
3. 실습 내용
4. 실습 방법
5. 실습 일정
6. 실습 평가 방법

③ 실습기관에서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 제출 시 제5조에 따른 현장실습 학기 기간 내에서 현장실습 시작일과 종료일을 계획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기를 연속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각 학기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9조(신청자격)

① 현장실습은 최소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해당 학기를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재학생(학업연장자 포함)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함)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학신청 가능 횟수가 1회 이상 남은 학생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편입생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③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재학생, 휴학생, 학업연장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 계절학기 수강자는 신청할 수 없다.
- ④ 선택형 4+1학년제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재학생(학업연장자 포함)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함)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학신청 가능 횟수가 1회 이상 남은 학생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⑤ 세부 신청자격은 지원센터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실습기관과의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제10조(신청절차)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절차 및 현장실습 운영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등록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학생선발)

- ① 지원센터에서는 실습기관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신청 사항을 통보하고 학생선발을 진행한다.
- ② 학생선발의 경우 실습기관의 요청 전공과 학생들의 전공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 ③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선발 결과를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작일 기준 최소 2일전까지 학교에 통보한다. 다만, 학생 선발 및 결과 통보가 지연될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작일은 학교측에 학생 선발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일 이후부터 시작하여 학생 및 학교에서 현장실습 사전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강신청 및 취소)

- ①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학기제 현장실습으로 지정된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한다. 다만, 재학 중 전공핵심 및 전공심화 학점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9학점으로 한다.
- ② 계절제 현장실습 및 선택형 4+1학년제의 경우 지정된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한다.
- ③ 현장실습 신청 학생은 현장실습 수행 학기 동안 현장실습 학점 외 다른 학점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현장실습 일정 및 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회봉사 및 어학연수를 통한 학점 취득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현장실습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기제 현장실습 및 선택형 4+1학년제의 수강취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 ○○○○○○ ○○○ ○○ ○○○ ○○○○ ○ ○ ○○○, ○○○○ ○ ○○○○ ○○ ○○ ○○ ○ ○○○ ○○○○.
  2. ○○○○○○ ○○ ○○ ○○○○○○ 70 ○○ ○○○ ○17○○40 ○ ○○ ○○○○ ○○○ ○○○ ○○○○ ○ ○ ○○○, ○ ○○○ ○○○○ ○○.
  3. ○○○ ○○○○○○ ○○ ○○○ ○ ○○○ 4+1○○○○○ ○○ co-op fee○ ○○ ○ ○○○ ○○ ○○ ○○ ○○○○ ○○○○, ○ ○○ ○○○○ ○○.

⑤ 계절제 현장실습에 대한 수강취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024년 1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2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2024년 2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3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2. 2024년 1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3. 2024년 1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⑥ 제1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어 수강취소 할 경우 학교기준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강료 등)

①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학기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업연장자의 경우 학점별 등록제도 기준을 적용한다.

②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선택형 4+1학년제의 경우 해당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면제한다. 다만, 선택형 4+1학년제 수강 학생은 학사관리 및 지도에 필요한 Co-op fee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등록휴학생이 선택형 4+1학년제를 수강하는 경우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선택형 4+1학년제 이수 후 정규학기 등록금으로 반영한다.

⑤ 재학생이 선택형 4+1학년제를 수강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 “학비감면 장학금”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그 외의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1. 2024년 4+1학기 등록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학생은 2024년 4+1학기 등록금 50%를 감면한다.
2. 2024년 4+1학기 등록금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학생은 2024년 4+1학기 등록금 30%를 감면한다.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학생은 2024년 4+1학기 등록금 20%를 감면한다.

⑥ Co-op fee는 참여기업 발굴, 업무협약, 학생관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소정의 경비로 선택형 4+1학년제 이수 학기별 200,000원으로 한다.

⑦ Co-op fee는 학기 개시 후 1개월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고, 납부 후에는 환불되지 않으며, 계절제 현장실습의 수강료에 관한 납부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024년 1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2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2024년 2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3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2. 2024년 1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3. 2024년 1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①. 2024년 1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2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②. 2024년 1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③. 2024년 1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④. 2024년 1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⑤. 2024년 1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2024년 1학기 17주 4주에 1주 이상 현장실습을 수강하지 않거나.



1. 00 000 000 00 00 0 00 0500 00 0000 0 00 20 0000 00 0 0 00.
2. 0000 100000 00. 00, 0100 00 0000 0000 000.
3. 00000000 600 0000 000000 00.

⑥ 계절제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0100 00 00 00 00 00 0000 00 0000 0000 000.
- 2, 0000 300000 00, 0100 00 00 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3. 00000000 200 0000 000000 00.

## 제17조(성적처리 등)

① 학기제 및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P)와 Fail(F)로 처리하고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② 선택형 4+1학년제로 취득한 학점은 Pass(P)와 Fail(F)로 처리하고, 평균평점(G.P.A) 및 졸업요건의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형 4+1학년제로 취득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표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현장실습 성적은 Fail(F)로 처리한다.

1. 0000 00 00 00 000000 000000 000000 00
2. 00000 00000 0000 0000 0000 00
3. 00000 000000 600 0000 00
4. 000000 0000 00 0000 00 0 00000 00 00
5. 01800300200 0000 00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현장실습이 중단 또는 조기 종료될 경우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출석일수가 각 현장실습 과정별 최소출석일수의 4분의 3 이상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현장실습 학점인정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00000000 00000 000000 0000 00
2. 00, 00 0000 00000 000000 0000 00
3. 0000 0000 0000 0000 00 00
4. 00000 00 0000 000000 00000000 0000 00
5. 00000 0 00000000 00 000000 0000 00. 00, 00 0 0000 0000 0000 00000, 0000 00 00 00 00 00.
6. 01800010 0 00 0000 00

## 제18조(학생 보호 및 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지원센터에 신속히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학생과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관계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실습의 조정 또는 중단, 취소 등을 협의한다.

1. 00000000 00000 00 0000 00 00000 000000 00 0000 00000 00000 00
2. 00000000 0000 00000000 00000 00000 00
3. 00 00000 0000 00, 00 00 0000 0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의 개선 또는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해당 현장실습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취소 결정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해당 소속대학에 통보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0000 0000 0000 0000 00 0000 0000 0000 00
2. 0000 0000 000000 0000 0000 0 00
3. 000000 0000 000000 00 00 00 0000 0000 0000 0 00
4. 018003002000 0000 00 0

## 부칙

부칙 (2005.12.01) (시행일) 본 내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 겨울방학 중의 단기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09.01) (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01)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6.01.)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01.)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표1-현장실습기관 제외 기준]의 4 중 (공채) 인턴에 해당하는 사항은 2013년 동계방학 계절제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02.01.)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 제8조에 따른 계절제 현장실습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2014년 하계방학 계절제 현장실습부터 적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2017.03.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국제처 국제팀의 경우 이 내규에도 불구하고 기존 내규에 따라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2017학년도 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까지만 적용한다.

부칙(2017.11.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동계학기 계절제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5.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하계학기 계절제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